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92

발의연월일: 2020. 10. 13.

발 의 자:김성원·송언석·김정재

이주환 · 이종성 · 이 영

성일종 · 임이자 · 최승재

윤창현 · 엄태영 · 권명호

지성호 • 이명수 • 이종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처 벌이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 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43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	
<u>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u>3년</u> <u>3</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만원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